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1995.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가격등의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도지사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함(안 제3조)

- (1) 가격등의 표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2)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
- (3)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나. 위반 유형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별표)

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라. 이의 신청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따로 붙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자료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가격등의 표시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공장도가격, 수입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하청주문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문자), 무역업자 및 소매업자를 말한다
2. "가격표시"는 공장도가격표시, 수입가격표시 및 소매가격표시로 구분한다.

제 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표시의무자로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등의 표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
3.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 4조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 5조 (과태료의 부과 및 청문) ①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방법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6조 (이의신청)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구분	관련 법규	대상자	과태료			
			1차	2차	3차	4차
1. 공장도(수입)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조(수입)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2.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3.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을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4.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조(수입)업자	500	1,000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500	1,000		
		기타소매업자	300	500	1,000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대 상 자				
			1 차	2 차	3 차	4 차
5.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 한법률 제3조	제조(수입)업 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기타소매업자	시정 권고	50	100	300
6. 공장도 또는 수입가 격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 위	물가안정에관 한법률 제3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100	300	500	
7.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 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자	물가안정에관 한법률 제16 조 제1항. 제29조제1항 3호·4호	제조(수입)업 자	시정 권고	300	500	1,000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 권고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 시정권고시에는 1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처분기준의 회차별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자가 상기소재 점포에서 취급하는 ○○○ 상품중 공장도가격
· 수입가격 · 소비자가격 미표시 상품이 있음을 확인함.

구 분	상 품 명	수 량	제조 (수입), 소매업자			수입국 (제조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공장도 · 수입 · 소비자가격 미표시						

199

확인자 주소

성명

(날인, 서명 또는 손가락
도장)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관계 (의)

조사자 직

성명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납부자성명) ○ ○ ○</p>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 금고 (인)</p> <p>도지사(○○) 귀하</p>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p> <p>○○ 금고 (인)</p> <p>(납부자성명) 귀하</p>		

80mm x 160mm
신문용지 54g/m²

※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

기타 참고자료

지방 자치법 (부분발췌)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부분발췌)

제 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 1. 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9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부분발췌)

제 5조(가격등의 표시)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과태료부과 및 청문) ①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통상산업부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뒷면 붙임

통 상 산 업 부

우 427-760 /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 전화 (02) 500-2432 / 전송 503-9496 . 담당: 김시호

문서번호 유통 55165 - 165

시행일자 1995. 4. 21.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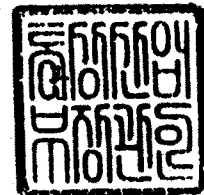
신청	과 장	후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5. 4. 25	결	
수	번호	165	재	
처리과	1826기		공	
담당자			람	

제 목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통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형태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을 정하여 송부 하오니 귀사의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1부. 끝.

통 상 산 업 부 장



산업정책국장 전 결

수신처 니(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제외).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

구 분	관련 법 규	대 상 자	과 태 료 부과 금액 (만 원)			
			1 차	2 차	3 차	4 차
○ 공장도(수입)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4조제1·2항	제조(수입)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동실시요령 제4조제3항	대규모소매점·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 소매사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대상 품목을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는 행위	동실시요령 제4조제4항	대규모소매점·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 소매사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동실시요령 제5조	제조(수입)업자	500	1,000		
		대규모소매점·대형점사업자	500	1,000		
		기타 소매사업자	300	500	1,000	
○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동실시요령 제6조제1항	제조(수입)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대규모소매점·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기타 소매사업자	시정권고	50	100	300

구	분	관련 법규	대상자	과태료 부과금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 공장도 또는 수입가격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제5항	대규모소매점·대형점사업자	300	500	1,000	
			기타 소매사업자	100	300	5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제조(수입)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대규모소매점·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 소매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